#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39

발의연월일: 2020. 9. 2.

발 의 자: 오영환·김남국·우원식

민형배 · 최혜영 · 이정문

전용기 · 이재정 · 박 정

박홍근 • 이수진 • 진성준

서영석 · 이타희 · 임호선

박성준 · 장경태 · 서영교

홍정민 · 강득구 · 김민석

김민철 · 문정복 · 김영배

한병도 · 양기대 · 이형석

소병철 • 박재호 • 오기형

오영훈 · 박완주 · 이소영

이은주 · 이용우 · 이해식

의원(36인)

### 제안이유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질문권과 경찰공무원·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일부만 규정하고 그 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시행규칙과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을 갖추지 못하여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따라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훈령에 있는 화재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재조사 범위를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현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 조사와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및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그 밖에 소방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화재조사의 주체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명확히 함(안 제5조).
- 나.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며, 대규모 화재에 대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다. 화재조사관의 자격을 화재조사 전문능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제한하고,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 라.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재현장의 보전조치를 하거나 화재 현장이나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하고,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통제구역의 출입을 금지함(안 제8조).
- 마.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하고,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인 등에게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
- 사.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감

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40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화재"란 의도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행위를 말한다.
-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4.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5. "관계인"이란 화재발생 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관계인 등은 화재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화재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화재조사의 개시 등

-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분석 등을 할 수 있

- 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물 수집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1. 화재워인에 관한 사항
- 2.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상황
-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
  - 2. 화재조사의 기술개발과 소속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담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화재조사관의 자격,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설치) ①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화재현장 보존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등 범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소방대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제 1항에 따라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 항 단서에 따른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출입·조사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 또는 화재신고자 등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및 화재신고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소방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0조(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인 등의 출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관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등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관서장의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 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1.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 2.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3. 관계인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등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소방관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화재조사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 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5조(화재조사 방해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화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소방대

장, 화재조사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 제16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 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 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법·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 제19조(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 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감정기관의 지정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분석·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연구개발사 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재조사 관 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조사·기 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 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벌칙

- 제22조(벌칙)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화재현장 에 출입한 사람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4. 제12조를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을 옮기 거나 임의로 처분한 사람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거물 수집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을 거부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소방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3조(화재조사 전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운영되는 화재조사 전담조사반 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화재합동조사단으로 본다.
- 제4조(종전의 화재조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은 제6조제4항에 따른 화재조사관으로 본다.
-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